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 1.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우정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정원감축 및 직급조정, 소속기관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정9급 정원 14명을 감축하고, 우정9급 368명을 우정7급 정원 134명과 우정8급 정원 234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우정 ICT 전문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명칭을 우정정보관리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6급 정원 16명을 5급 정원 16명으로, 7급 정원 104명을 6급 정원 104명으로, 8급 정원 126명을 7급 정원 126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7. ~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우정사업정보센터)”을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장”을 “우정정보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정보센터”를 “정보관리원”으로, 같은 조 제4항 제13호 및 제14호, 제22호의 “정보센터”를 각각 “정보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33,082”를 “33,068”로 하고, 일반직 계 “33,082”를 “33,068”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10”을 “626”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식품위생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996”을 “3,084”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간호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073”을 “2,095”로, 행정서기·공업서기·식품위생서기·간호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590”을 “2,464”로, 우정주사보 “4,284”를 “4,418”로, 우정서기 “6,650”을 “6,884”로, 우정서기보 “9,534”를 “9,15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2,956”을 “32,942”로 하고, 일반직 계 “32,956”을 “32,942”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간호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83”을 “699”로, 행정주사·공업주사·식품위생주사·간호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261”을 “3,349”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간호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052”를 “2,074”로, 행정서기·공업서기·식품위생서기·간호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225”를 “2,099”로, 우정주사보 “4,798”을 “4,932”로, 우정서기 “6,911”을 “7,145”로, 우정서기보 “8,309”를 “7,92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u>우정사업정보센터</u>	제4장 <u>우정정보관리원</u>
제11조(<u>우정사업정보센터</u>) ① <u>우정사업정보센터장</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1조(<u>우정정보관리원</u>) ① <u>우정정보관리원장</u> ----- ----- ----- -----.
② <u>우정사업정보센터</u> (이하 “ <u>정보센터</u> ”라 한다)에 정보기반과·우편정보과·예금정보과·보험정보과 및 차세대금융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u>우정정보관리원</u> (이하 “ <u>정보관리원</u> ”라 한다)----- ----- ----- ----- ----- -----.
④ 정보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정보센터</u> 의 조직 및 정원관리	13. <u>정보관리원</u> 의 조직 및 정원관리
14. <u>정보센터</u>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 관리	14. <u>정보관리원</u> ----- ----- -----
15. ~ 21. (생략)	15. ~ 21. (현행과 같음)
22. <u>정보센터</u>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2. <u>정보관리원</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2]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3,082</u>	<u>33,068</u>	-14
일반직 계	<u>33,082</u>	<u>33,068</u>	-14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 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610</u>	<u>626</u>	+16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식품 위생주사 · 간호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2,996</u>	<u>3,084</u>	+88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간호주 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 사보	<u>2,073</u>	<u>2,095</u>	+22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식품 위생서기 · 간호서기 · 시			

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590</u>	<u>2,464</u>	-126
·	·	·	
우정주사보	<u>4,284</u>	<u>4,418</u>	+134
우정서기	<u>6,650</u>	<u>6,884</u>	+234
우정서기보	<u>9,534</u>	<u>9,152</u>	-382
·	·	·	
·	·	·	

[별표 3]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2,956</u>	<u>32,942</u>	-14
일반직 계	<u>32,956</u>	<u>32,942</u>	-14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식품위생사 무관 · 간호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683</u>	<u>699</u>	+16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식품 위생주사 · 간호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3,261</u>	<u>3,349</u>	+88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간호주 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 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 사보	<u>2,052</u>	<u>2,074</u>	+22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식품 위생서기 · 간호서기 · 시 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2,225</u>	<u>2,099</u>	-126
.	.	.	
우정주사보	<u>4,798</u>	<u>4,932</u>	+134
우정서기	<u>6,911</u>	<u>7,145</u>	+234
우정서기보	<u>8,309</u>	<u>7,927</u>	-382
.	.	.	
.	.	.	